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박철완 소유물 (사건번호:2025타경63901)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 박진영
감정평가서 번호	대한 제250818-12-0008호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 전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대한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일산방송컴플렉스 제2층 제2-2113호
TEL : (031)812-8811 FAX : (031)812-9811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태범

김태범



(주)대한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장

이태윤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일억삼천사백만원정 (₩134,000,000.-)**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 박진영	감정평가목적	경매		
채무자	-	제출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2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박철완 (2025타경63901)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8.18	2025.08.18	2025.08.21	

감정평가내용	공부(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m ²) 또는 수량	종류	면적(m ²) 또는 수량	단가(원/m ²)	금액(원)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134,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134,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김보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소재 '내유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다세대주택)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2계에서 의뢰한 법원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대상물건의 개요

대상물건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8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108번길 93)
층·호수	3층 303호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평지붕
사용승인일자	2012.11.29
주 용 도	공동주택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기호	해당 층/호	전유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전용률 (%)	대지권 (㎡)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
1	3/303	29.3	8.25	37.55	78.03	37.051	공동주택(다세대주택)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08월 18일입니다.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대상물건에 대하여 2025년 08월 18일에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 시 대상물건의 존재 여부, 대상물건의 공부 및 의뢰된 목록과 현황과의 부합 여부, 대상물건의 특성,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권리관계의 확인 및 기타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의 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

대상물건의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및 현황 점유부분에 의거하여 확인하였으며, 내부구조는 거주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탐문 및 육안에 의한 외부관찰 등을 통하여 표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의 근거 및 적용

1. 감정평가의 근거

가. 근거 법령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에 근거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p>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p>	<p>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p>
<p>제11조 [감정평가방식]</p>	<p>감정평가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p>
<p>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p>	<p>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p>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대상물건은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시장성이 높은 대상물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Ⅲ.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감정평가에 참고한 가격자료

가. 대상물건 거래사례

최근 3년 이내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인근지역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 / 층 / 호수	전유면적 (㎡)	거래시점	거래금액(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비고 (이용상황)
				사용승인일			
a	내유동 287	- -/4/401	30.595	2025.05.26	145,000,000	약 4,740,000	다세대주택
				2012.11.29			
b	내유동 278-18	라피네 102/3/302	53.75	2025.04.07	220,000,000	약 4,090,000	다세대주택
				2022.08.22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KAIS]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대상물건 평가사례

최근 3년 이내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인근지역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층/호수	전유면적 (㎡)	평가목적	기준시점	평가금액(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비고 (이용상황)
					사용승인일			
㉠	내유동 280-9	삼성힐스 101/2/202	58.59	경매	2022.11.07	250,000,000	약 4,270,000	다세대주택
					2018.09.13			
㉡	내유동 278-52	라피네 103/3/301	53.407	경매	2024.11.12	244,000,000	약 4,570,000	다세대주택
					2022.06.22			
㉢	내유동 287	- /4/401	30.595	담보	2025.07.04	145,000,000	약 4,740,000	다세대주택
					2012.11.29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마.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유형	부동산 가치수준
인근 유사 다세대주택	전유면적당 단가: 4,400,000원/㎡ ~ 4,600,000원/㎡ 수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경매 낙찰가율

지역 / 기간	경기/고양시 덕양구 2024년 08월~2025년 07월					
구 분	낙찰가			낙찰건수		
	총감정가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집합건물	90,252,850,000원	74,743,657,349원	82.8%	632건	232건	36.7%
다세대	17,036,250,000원	11,273,842,281원	66.2%	269건	84건	31.2%
연립	986,000,000원	718,451,000원	72.9%	24건	5건	20.8%

<최근 1년간 해당 지역 용도별 평균 낙찰가율 (출처 : 인포케어)>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비교사례의 선정

최근 거래된 사례 중 대상물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층 / 호수	전유면적 (㎡)	거래시점	거래금액(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대상 물건
				사용승인일			
a	내유동 287	- 4/401	30.595	2025.05.26	145,000,000	약 4,740,000	1
				2012.11.29			

나. 사정보정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치수준 대비 적정하게 거래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1.0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시점수정

1) 개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월간동향)의 유형별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시점 수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의 매매가격지수가 미고시된 경우 기준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2) 시점수정치

대상 물건	비교 사례	구 분	거래시점	기준시점
			매매가격지수	매매가격지수
1	a	매매가격지수 (경기 경의권 (연립))	2025년04월	2025년07월
			100.0	99.6

3) 시점수정치 산정

대상 물건	비교 사례	구 분 (산정기간)	시점수정치	시점수정치 산정
1	a	경기 경의권 (연립) 2025.05.26~2025.08.18	0.99600	$1 + ((99.6 - 100.0) / 100.0)$ = 0.9960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가치형성요인 비교

- 구분건물 [주거용] 본건: 1 (사례기호: a)

조 건	세부항목	비교치	검토의견
단지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가로와 폭, 구조 등)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등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1.00	대체로 유사함.
단지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1.00	대체로 유사함.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0.97	다락 등에서 열세함.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대체로 유사함.
격 차 율			0.97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거래사례 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 비교치	산정단가 (원/㎡)	전유 면적 (㎡)	산정금액 (원)	시산가액 (원)
1	4,740,000	1.00	0.99600	0.970	4,579,409	29.3	134,176,684	134,000,00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장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된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시장성이 높은 대상물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호	전유면적 (㎡)	대지권 (㎡)	감정평가액(원)	비고 (전유면적㎡당 단가)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87	- 3/303	29.3	37.051	134,000,000	4,573,379
합 계					134,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기준시점 : 2025-08-18>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도로명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108번길 93	287	공동주택	철근 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평지붕 지상4층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내) 철근콘크리트조 3층 303호	29.3	29.3	134,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8.25㎡ 포함)
1	동 소	287	대	계획관리지역	425			
			소유권 1. ---- 대지권	37.051 ----- 425		37.051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	40,200,000	
						건 물 :	93,800,000	
합 계					₩134,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소재 "내유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평지붕 지상4층 건물중 3층 303호로서,
외벽: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마감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 창호 등으로 시공되었습니다.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방2, 주방/거실, 욕실, 현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인접 도로상태 등

남동측으로 로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zone),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젓소,말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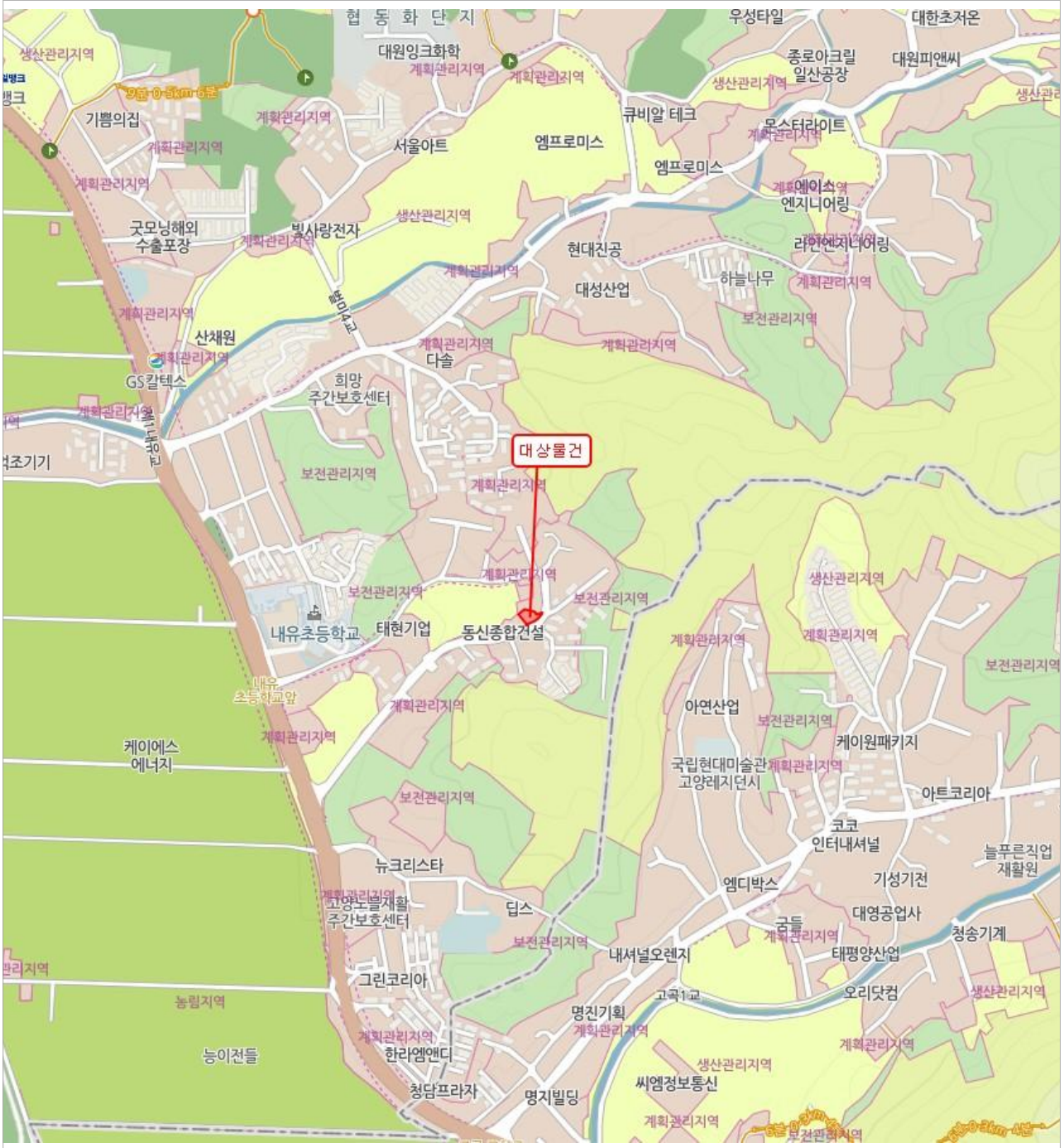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미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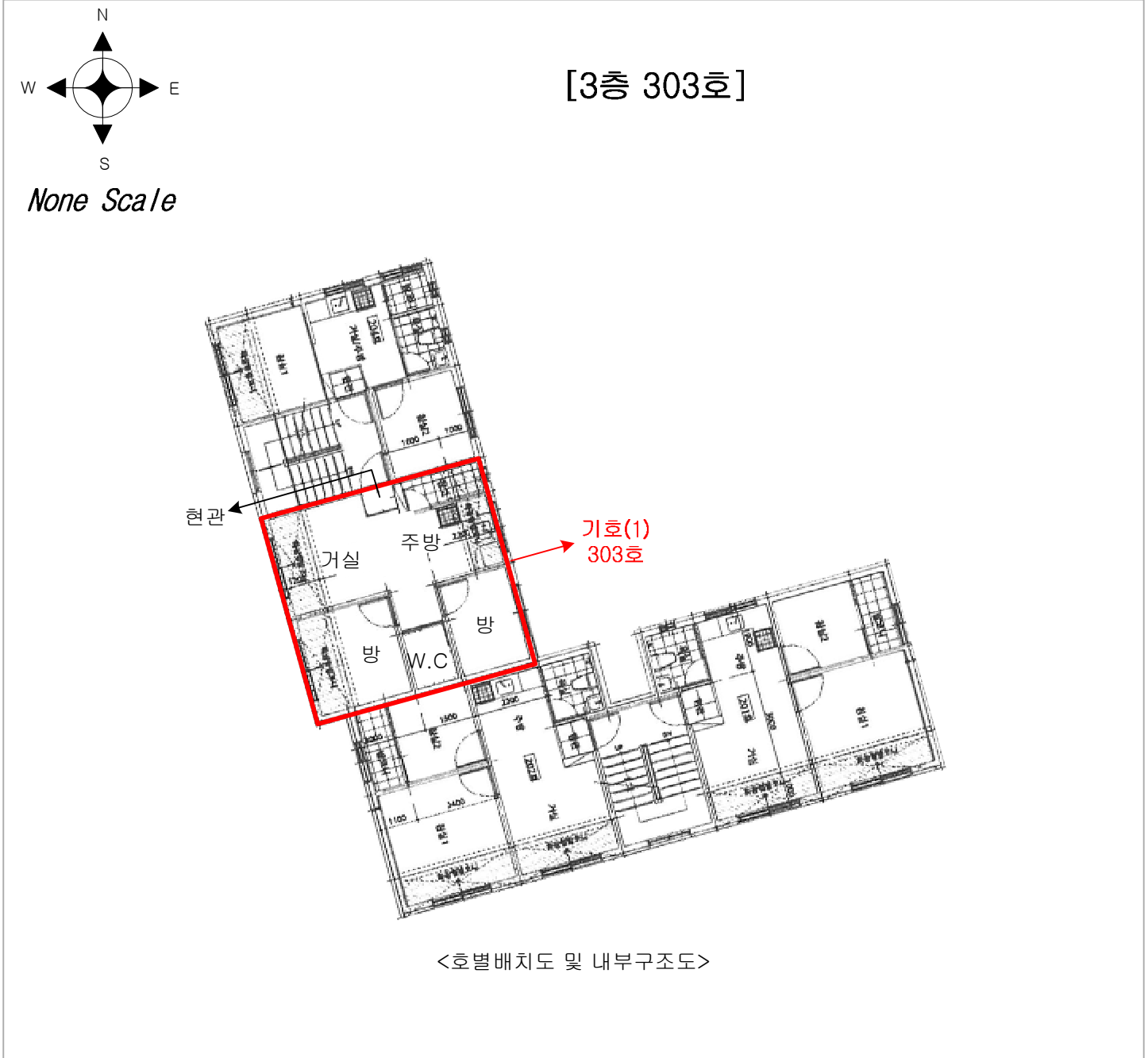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87 3층 303호



건물개황도 및 임대상황



임대상황

범례	임차인성명	임대조건		조사처	비고
		보증금	월세		
303호		임대미상.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전경



주위환경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공동현관문



대상물건 출입문